

◎ 환경처고시제91-22호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규정(환경처고시 제89-8호: '89. 5. 25)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아래 표 참조)

1991년 4월 25일

환경처장관

부 칙

이 고시는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환경처고시제91-23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해당 배출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991년 4월 25일

환경처장관

•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해당배출시설지정

1. 대상지역

- 가. 밀양군: 하남읍, 삼랑진읍, 상남면
- 나. 김해군: 상동면,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 다. 양산군: 원동면(선리, 대리 제외)
- 라. 창원군: 대산면

2. 해당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시안화물, 유기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배출하는 시설

부 칙

-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환경처고시제91-25호

제작자동차인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동차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1991년 5월 3일

환경처장관

※ 내용: 생략

부 칙

-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② (폐지규정)자동차배출가스검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처고시. 제89-2호), 자동차소음허용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환경처고시 제86-11호 및 환경처고시 제89-13호)은 이를 폐지합니다.
- ③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봅니다.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규정중개정

현		행		개 정			
지 역 구	청 정	가	나	지 역 구	청 정	가	나
밀양군		상동면, 산외면 하남읍, 초동면 삼랑진읍, 상남면, 단장면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밀양군	하남읍, 삼랑진읍, 상남면,	상동면, 산외면 초동면, 단장면	'청 정' 지역 및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
김해군		상동면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김해군	상동면,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청 정' 지역을 제외한 전역
양산군		'나'지역을 제외한 전역	장안읍, 웅상면	양산군	원동면(선리, 대리 제외)	'청 정' 지역 및 '나'지역을 제외한 전역	장안읍, 웅상면
창원군		'나'지역을 제외한 전역	내서면	창원군	대산면	'청 정' 지역 및 '나'지역을 제외한 전역	내서면

◎ 환경처고시제91-24호

환경보전법 및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환경정책기본법 등 6개법으로 분법화되면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환경처(청)고시중 독물, 특정독물, 극물지정 등 17개의 고시를 폐지함을 고시합니다.(아래 표 참조)

1991년 5월 2일

환경처장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환경청고시 제87-15호 생활소음규제기준은 1991년 5월 3일 폐지합니다.

환경처(청)고시중 폐지되는 고시

고시번호	제 목	공 포 년 월 일	폐 지 사유
환경청고시 제81-6호	독물, 특정독물, 극물지정	'81. 4. 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시행규칙에서 유독물, 특정 유독물로 지정
환경청고시 제85-1호	독물, 특정독물, 극물추가지정	'85. 3. 8.	"
환경청고시 제86-16호	독극물 품목고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출 면제품목 고시	'86. 10. 31.	법률폐지
환경청고시 제87-4호	비산분진발생원 시설관리기준	'87. 4. 8.	대기환경보전법에 반영
환경청고시 제87-15호	생활소음규제기준	'87. 8. 4.	소음·진동규제법에 반영
환경청고시 제87-28호	폐수재이용처리자지정	'87. 10. 13.	법령개정에 따라 허가제로 변경
환경청고시 제87-30호	폐수수탁자지정 고시	'87. 11. 12.	"
환경청고시 제88-1호	폐수재이용지정 고시	'88. 1. 21.	"
환경청고시 제88-4호	폐수처리자지정 고시	'88. 2. 10.	"
환경청고시 제88-9호	폐수자가처리자지정 고시	'88. 3. 9.	법령개정에 따라 허가제로 변경
환경청고시 제88-16호	"	'88. 4. 2.	"
환경청고시 제88-18호	"	'88. 5. 19.	"
환경청고시 제89-3호	비산분진발생원 시설관리기준개정	'87. 2. 17.	대기환경보전법에 반영
환경청고시 제89-12호	폐수재이용자지정 고시	'87. 6. 20.	"
환경청고시 제90-5호	폐수처리자지정통보	'90. 3. 15.	"
환경청고시 제90-8호	폐수자가처리자지정 고시	'90. 4. 4.	"
환경청고시 제90-14호	"	'90. 7. 18.	"

◎ 환경처고시제91-26호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자동차배출허용 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1991년 5월 3일

환경처장관

※내용 : 생략

부 칙

-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검사장비 및 인력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비와 인력은 이 고시 시행일부부터 6개월 이내에 갖추도록 합니다. ◻

**대양과 함께 성장할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분 야	모집인원	자 격	특 기 사 항
환경관리 및 연구	1명(남)	• 4년제 환경공학과 졸업 • 운전면허소지자	• 일본어, 영어 가능자 우대 • 폐수처리 현장 유경험자 우대 • 30세 미만
환경관리 및 연구	1명(남)	• 전문대 이상 환경 관련 학과 졸업 • 운전면허소지자	• 상동 • 상동 • 27세 미만
계측기관리 및 연구	1명(남)	• 전문대 이상 전자 전기 관련학과 졸업 • 운전면허소지자	• 일본어, 영어 가능자 우대 • 전자 전기관련 업무 중 사 유경험자 우대 • 27세 미만
경비·전산	1명(여)	• 상고 졸업자 • 컴퓨터 조작 가능자	• 경리, 회계업무 유경험자 우대 • 25세 미만(미혼)

- 근무 및 업무 경력에 따라 일본 등 해외 기술 인 수 제공
- 매주 2회 일본어 강의 실시 제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양바이오케미칼; (02)243-0825, 5592로 문의 요망